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647

발의연월일: 2025. 3. 5.

발 의 자: 안태준 · 오세희 · 염태영

정성호 · 김정호 · 서영석

서미화 · 안호영 · 소병훈

이연희 · 복기왕 · 홍기원

정준호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달종사자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유상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한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이륜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은 보험사 약관에따라 가정용, 비유상운송, 유상운송보험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음.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배달업무를 하는 배달종사자는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그런데 가정용에 비해 유상운송보험의 보험료가 훨씬 높아 배달종 사자들이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꺼리는 상황으로, 보험개발원의 2022년 배달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율은 38.7%에 불과한 실정임.

배달플랫폼 업체인 배달의민족은 유상운송보험 가입자만 배달종사

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을 지난 7월 폐지하였으며, 쿠팡이츠도 유상운송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음. 이는 배달플랫폼 업체 들이 신규 배달종사자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한 결과임.

유상운송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는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고, 배달종사자도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함과 동시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배달플랫폼 업체들이 배달종사자가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확인하도록 하고, 미가입 시에는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며, 이에 위반할 경우 인증사업자의 인증을 취소할수 있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배달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5호 신설, 제19조의 인증 신설, 제51조제1항제9호의4 신설).

법률 제 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제3장에 제1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9조의5(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 가입 확인 등)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사용되는 이륜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종사자등이 제1항에 따른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 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제1항에 제9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4. 제19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보험등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 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보험등 가입 여부 확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의5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와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 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6개월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해지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인증의 취소) ① 국토교통	제19조(인증의 취소) ①
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u>-</u>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	
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 <신 설></u>	제19조의5(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등의 보험 가입 확인
	등)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
	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사용
	되는 이륜자동차의 운행으로
	<u>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u>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9의3. (생 략) <신 설> 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 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는지 확인하 여야 한다.

-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 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제1 항에 따른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소화물배송 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 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 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 제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과태료) ① -----

1. ~ 9의3. (현행과 같음)
9의4. 제19조의5제1항을 위반하
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
자등이 보험등에 가입하였는
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
	업자 또는 영업점
10. ~ 14. (생 략)	10. ~ 1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